

의안번호	2208728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5. 3. 13.
추계번호	25B1337

12 · 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총 184억 8,400만원(연평균 36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등)	3,735	2,701	—	—	—	6,436	1,287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0조 및 제51조)	2,203	2,247	2,292	2,337	2,384	11,463	2,293
추모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8조)	112	115	117	119	122	585	117
합계	6,050	5,063	2,409	2,456	2,506	18,484	3,697

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12·29여객기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2·29여객기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2·29여객기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함(제4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함.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봄(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 규정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9조(사무처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1항)	의무규정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제2항)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함(제3항)	
8	안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제5항)	의무규정
11	안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28조(조사의 방법)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재량규정
13	안 제33조(청문회의 실시)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6	안 제4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의무규정
17	안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0항)	재량규정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음(제11항)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 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2항)	의무규정
18	안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조사위원회는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2·29여객기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간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함	의무규정
20	안 제50조(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의무규정
21	안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함.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함(제1항)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2	안 제54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2·29여객기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4	안 제57조(생활지원금 등)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재량규정
25	안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6	안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국가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7	안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8	안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제1항)	의무규정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9	안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0	안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1	안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의무규정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2	안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33	안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1항)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4	안 제68조(12·29 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함(제3항)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 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 분의 1을 넘지 못함(제4항)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35	안 제71조(재단 출 연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 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 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 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참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3	안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4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5	안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	
6	안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	
7	안 제19조(사무처의 설치)	○	
8	안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	
9	안 제21조(직원의 신분 보장)	○	
10	안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	
11	안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12	안 제24조(진상규명조사)	×	• 미첨부 3호 - 현 시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여부 및 횟수, 여비 등 지급 대상이 되는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할 사람의 규모, 중요한 증언·진술 등을 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지원 여부 및 내용, 종합보고서 등의 작성을 위한 기획단 설치 여부 및 규모, 자료기록단의 설치 여부 및 수집자료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13	안 제28조(조사의 방법)	×	
14	안 제33조(청문회의 실시)	×	
15	안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곤란
17	안 제44조(운송비·여 비 등)	×	
18	안 제46조(종합보고서 의 작성과 제출 등)	×	
19	안 제47조(자료기록단 의 설치)	×	
20	안 제50조(12·29여객 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 원회)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참고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 원회
21	안 제51조(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22	안 제54조(지원의 원칙)	—	- 미대상 - 피해구제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국 가 등의 지원에 대한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 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3	안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 미첨부 3호 - 제정안이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및 추모를 위한 구 체적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는 등 현 시점에서는 각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함 ※ 첨부 “[참고자료] 부처별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 사업 추진현황” 참조
24	안 제57조(생활지원금 등)	×	
25	안 제58조(심리상담 등 의 지원)	×	
26	안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	
27	안 제61조(근로자의 치 유휴직 지원)	×	
28	안 제62조(「긴급복지지 원법」 및 「아이돌봄 지 원법」 등에 대한 특례)	×	
29	안 제63조(피해자에 대 한 법률지원)	×	
30	안 제64조(피해자의 금 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31	안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 행)	×	
32	안 제66조(공동체 복합 시설의 설치)	×	
33	안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4	안 제68조(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참고 -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35	안 제71조(재단 출연 등)	×	• 미첨부 3호 -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합리적인 출연 규모 등을 추계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 등의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 안 제50조 등의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 안 제68조의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조사위원회) 현 시점에서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별도 사무실의 설치 여부 및 장소 등을 알 수 없어, 안 제6조 등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①상임·비상임위원 인건비 또는 수당, ②사무처 직원 인건비에 한정하여 추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등을 적용¹⁾
 - 안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한 차례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한 차례 3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활동기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584

연장이 가능하므로, 조사위원회가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 (심의위원회) 안 제50조 등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를 ①위촉위원 수당, ②지원조직 운영비에 한정하여 추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
 - (추모위원회) 안 제68조에 따른 추모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를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
- 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49조)
- (조사위원회) 안 제8조는 조사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²⁾의 운영 사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례를 참고하여 위원장에게 장관급 상당의 보수를, 상임위원 2명에게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며, 회의는 월 2회(연 24회) 개최하고 비상임위원 6명에게 회의 수당으로 회당 35만원(참석수당 15만원+안전검토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한 차례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한 차례 3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 6개월로 가정

[표 2] 위원장·상임위원 인건비 및 비상임위원 수당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위원장(장관급 1인) 인건비	192	98
상임위원(차관급 2인) 인건비	367	187
비상임위원(6인) 수당	50	25
합계	609	310

주: 1.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가정하여 2027년은 6개월분 반영
 2.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건비는 「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장관급 및 차관급 “연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기관부담금(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요율 적용)을 더한 금액으로 함
 3. 비상임위원 수당은 월 2회 개최되는 회의당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무처) 안 제1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안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위원을 제외한 직원을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만큼 둘 수 있으며, 안 제23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므로, 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직원을 60명 두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중 일부는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되어 별도정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60명 중 46명(77%)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14명(23%)은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되어 별도정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은 정무직 3명, 별정직 53명, 일반직 14명, 경찰공무원 2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정무직·별정직 77%, 기타 23%)

- 신규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 46명에 대해 2023년 기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별정직 1인당 평균 보수(5,640만원)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안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 6개월로 가정하고, 안 제49조에 따라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하므로, 사무처의 활동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 9개월로 가정³⁾

[표 3] 조사위원회 사무처 설치에 따른 직원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별정직 신규채용 인건비	3,126	2,391

주: 1. 위원회 사무처의 활동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가정하여 2027년은 9개월분 반영

2. 사무처 직원 중 46명(77%)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년 별정직 1인당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며, 기관부담금(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요율 적용)을 더한 금액을 추계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사무처 포함)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4억 3,600만원(연평균 12억 8,700만원)으로 추계됨

3) 안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표 4]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조사위원 인건비	609	310	-	-	-	919	184
사무처직원 인건비	3,126	2,391	-	-	-	5,517	1,103
합계	3,735	2,701	-	-	-	6,436	1,287

주: 1. 현 시점에서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별도 사무실의 설치 여부 및 장소 등을 알 수 없어, 조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직원의 인건비(기관부담금 포함)만 추계하였음

2. 안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조사위원회 사무처의 활동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위원회·사무처의 구성 및 활동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0조 및 제51조)

- **(심의위원회)** 안 제51조는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민간위원 6명에게 회의 1회당 40만원(참석수당 20만원+안전검토비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 6명 × 40만원 × 4회 = 960만원/연

– 회의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원조직)** 안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므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사실조사단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의 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사실조사단의 2024년 예산(21억 600만원)과 동일 규모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지원조직 운영 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지원조직 포함)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4억 6,300만원(연평균 22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심의위원 수당	10	10	10	10	10	50	10
지원조직 운영비	2,193	2,237	2,282	2,327	2,374	11,413	2,283
합계	2,203	2,247	2,292	2,337	2,384	11,463	2,293

주: 유사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8조)

- 안 제68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추모위원회 및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중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⁵⁾의 운영 사례를 참고할 경우, 제정안에 따른 추모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500만원(연평균 1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2024년 예산(1억 800만원)과 동일 규모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추모위원회 운영 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6] 추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모위원회 구성·운영비	112	115	117	119	122	585	117

주: 유사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총 184억 8,400만원(연평균 36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등)	3,735	2,701	-	-	-	6,436	1,287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0조 및 제51조)	2,203	2,247	2,292	2,337	2,384	11,463	2,293
추모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8조)	112	115	117	119	122	585	117
합계	6,050	5,063	2,409	2,456	2,506	18,484	3,697

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부처별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세월호지원단 제출자료)

□ 피해지원 사업

○ 완료사업

항목	완료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담당부처
생활 지원금	2015년	○ 대상 : 희생자·구조자가 속한 가구 ○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 희생자 : 4인기준 259만원 - 구조자 : 4인기준 129만5천원 ○ 기간 : 1회 지급(∼'15.11.19)	○ 447가구(1,745명), 960백만원	해양수산부
긴급복지 지원	2015년	○ 대상 : 희생자가 속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상당액 지급 * 4인 가구 1,105,600원/월 ○ 기간 : 최대 6개월	○ 276가구(775명), 718백만원	보건복지부
대입 특별전형	2015년	○ 대상 :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 ○ 내용 : 수시모집(9월), 정시모집(12월)시 해당 학생들이 특별전형 대학에 지원	○ 수시 76명, 정시 2명	교육부
근로자 치유휴직	2016년	○ 대상 : 근로자인 피해자 ○ 기간 : 1년 이내 신청(∼'16.3.28), 최대 6개월 휴직	○ 20개 사업장(21명)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비용	2016년	○ 대상 :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내용 : 휴직자 최대 월120만원, 대체인력 월60만원 ○ 기간 : 최대 6개월	○ 20개 사업장 92백만원	고용노동부
교육비	2017년	○ 내용 :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지원 ○ 기간 : 법 시행일('15.3)로부터 1년(초중고), 2학기(대학생) 지원	○ 초중고 : 1,914명, 2,124백만원 ○ 대학생 : 119명, 388백만원	교육부
단원고 교육 정상화	2017년	○ 내용 : 학교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교직원의 확보·배치 및 우대, 전문상담기구(마음건강센터 등) 설치·운영 등 ○ 기간 : ∼'17.3.28	○ 교육환경개선 추진 : 8,638백만원 ○ 교원확보·배치관련 우대 ○ 마음건강센터운영('16.6월 종료)	교육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024년	○ 대상 :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 ○ 내용 :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 112억원	행정안전부

○ 계속사업

항목	시작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24.12월 기준)	담당부처
안산 마음건강 센터 건립·운영	2017년	○ 내용 : 세월호 피해자 등 트라우마 사례관리 및 진료, 종합적 정신건 강 관리 서비스 제공 *(건립) '24.11월 준공 (운영) '25.1 월~	○ 건립비용 : 417억 원 ○ 운영비용 : 63억 원(1년)	보건복지부
공동체 복합시설	2018년	○ 내용 : 안산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 로 심리상담 및 건강·돌봄·문화 서비스 제공 * (착공) '24.8월	○ 건립비용 : 161억 원	행정안전부
지역경제활 성화 사업	2015년	○ 내용 :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 -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총 15개 사 업	○ 지원비용 : 493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의료 지원금	2014년	○ 대상 :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 내용 : 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 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 요되는 비용	○ 지원비용 : 102억 원	보건복지부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2015년	○ 대상 : 친권자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자 ○ 내용 : 성년이 될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 양육보조금, 상해 보험료, 아동 심리 치료 지원 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교직원 휴직	2015년	○ 대상 : 사고 당시 단원고 재직 교 직원 ○ 내용 : 휴직기간 봉급·수당 등 전 액 지급, 경력평정 기간 및 승급기 간 산입	○ 대상자 106명 중 총 89명 휴직	교육부
심리상담 지원	2014년	○ 대상 : 피해자 및 유가족 ○ 안산, 제주, 인천 등 세월호 피해 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안산, 제주, 인천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 램 운영 등	보건복지부
금융거래 협조	2015년	○ 대상 :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 금융부담 완화(금 리인하 3건, 상환 유예 4건) ○ 소상공인 재해자 금 상환기간 연장 58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 업부

□ 추모사업

○ 완료사업

항목	완료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담당부처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2016년	○ 내용 : 일반인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인천에 추모관 건립	○ 건립비용 : 31억 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사 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	2023년	○ 내용 :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시설 건립	○ 건립비용 - 진도 국민해양안 전관 : 270억원 - 안산 해양안전체 험관 : 400억원	해양수산부

○ 계속사업

항목	시작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24.12월 기준)	담당부처
안산세월호 추모시설 (가칭4.16생 명안전공원)	2019년	○ 내용 : 희생자 추모와 시민 문화·편의시설이 복합된 문화공원 조성 * (착공) ’24.11월	○ 건립비용 : 509억 원	해양수산부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2019년	○ 내용 : 희생자 추모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명품문화공원 조성	○ 건립비용 : 303억 원	해양수산부
4.16 재단지원	2019년	○ 내용 :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출연·보조	○ 지원비용 : 147억 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